제90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**일시·장소:** '23. 12. 4(월) 14:00 ~ 14:45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* 회의방식 : 비대면 화상회의

□ 참 석 자

- (주재·참석) 위원장 위임으로 총무위원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재
 - ~ (위원회) 총무위원 위원회 회의실 출석 / 위원장 등 6명 온라인 출석
 - └ (해경청) 차장 및 안건 소관 국·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
- 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5건 (원안의결 3, 수정의결 2), 보고 1건【심의·의결 5건】

연번	형식	안 건 명	내 용	심의 결과	부서
1	훈령	「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」 일부개정안	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'위원증* 제작' 조문 신설 * 8월 30일 위원증 기배포, 연속성을 위해 훈령에 반영 '명예위원'에게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 	원안 의결	기획 재정
2	고시	「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」 일부개정안	・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기준에 '안전 검사필증' 발급・재발급비를 신규 추가 * 「수상레저기구등록법」에 기존 '안전검사증(수수료 3천원)'외에 '안전검사필증(수수료 4천원)' 부착의무 조항 신설	원안 의결	수상 레저
3	·한 연 0	「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」 전부개정안	 국정원「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」이 '공개'로 전환됨에 따라 훈령을 공개로 전환, 중복조문*일제 정비*용어 정의, 기관장 책무 등 부처 공통 적용 조문 삭제, 재정비 자체 정보보안 위반자 처리기준*신설*위반사항별로 △사법처리 △중징계 △경징계 △경고로 구분 	수정 의결	
4	전0 선난	「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」 전부개정안	・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('23.9월)을 계기로, 상위 법령과의 중복조문* 삭제 등 조문체계 재구성 * 개인정보 수집 절차, 개인정보파일 파기,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와 유출시 대응방법, 개인정보 침해시 처리절차 등 ・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의 책무조항(8가지') 신설 * 개인정보파일 지정・보호・파기・공개, 유출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, 관련 업무 위탁시 수탁자 관리・감독 등	수정 의결	정보 통신
5	훈령	「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」폐지안	• 「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」 폐지 * 개인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범주로서 관리체계가 동일 하고, 훈령내용이 중복되어「개인정보 보호규칙」으로 통합	원안 의결	

【보고 1건】12월 주요 업무 보고(기획재정)